

연구윤리 내규

<2008. 6. 25 제정>

<2010. 9. 10 개정>

<2012. 3. 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함)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학생회원을 포함한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격 허위 진술,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출판”의 경우, 대한전기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전기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2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7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 ② 참고문헌 왜곡
-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9조(원문의 재활용)

-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장 출판 윤리

제11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④ 저자 및 공동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때, 연구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윤리서명을 해야 한다.
<2012. 3. 9 개정>

제12조(저자결정 기준)

-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1.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2.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 ②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1항에서 기술한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사적 접촉 등을 통해 얻은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⑤ 저자가 불가피하게 웹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읽은 날짜를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⑦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 ⑧ 인용 대상 연구가 초기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되었고,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도 출판되었으면, 학술지 논문

을 인용해야 한다.

- ⑨ 학회는 저자가 인용방법 및 연구윤리내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012. 3. 9 개정>

제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6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①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①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대상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절 검증 절차

제19조(검증 절차)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① 학회 사무국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 ②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제보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낸다.
- ③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을 심의한다. 제보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2. 3. 9 개정>
- ⑤ 윤리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4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린다.
-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로 보낸다. 조사 기간은 8주를 넘기지 않는다.
 - 1.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심의·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린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4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2.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⑦ 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논문 취소 및 취소사유에 대한 공지를 학회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며, 피조사자가 학회 회원일 경우 피조사자의 징계를 상벌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2012. 3. 9 개정>
 - 2. 징계 내용은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 3. 제19조 6항 2호에 따라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연구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사회는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2절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2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 ② 제보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 ③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제22조(조사위원회 구성원칙)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정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회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활동)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노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 ① 이 내규는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② 이 내규는 2010년 9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내규는 2012년 3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이 내규는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 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